

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7(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) ①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(이하 이 조에서 "신용보증조합"이라 한다)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,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.

②신용보증조합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